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투자목적회사 등록·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 4)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 5)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 6) 등록신청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투자목적회사 관련사항 추가

나. 조문 정비(안 제15조, 제18조,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등)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2)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 3)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3. ~ 1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전환의 조건을 연동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제1호에 따른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7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주주”를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발행주식 총수”를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로, “주식 소유”를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발행주식 총수”를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로, “주식소유현황”을 “주식소유현황 또는 출자지분현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은”을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7.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8.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벤처투자회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제4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회사 명 칭		회사형태	
등록번호		설립일	
주 소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사항			
자 산	금		원
자기자본	금		원
부 채	금		원
자 본 금	금		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명 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금	원	출자지분
투자목적회사의 차입에 관한 사항			
차입금융기관			
차입일		만기일	

차입금액	금		원
담보가액	금		원

투자목적회사란(장)

제5장 제목, 제18조 제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19조 제목, 제20조 제목, 제20조제1호, 제20조제2호, 제20조제3호, 제20조제4호, 제21조 제목, 제22조 제목,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제목, 별지 제9호서식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벤처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금 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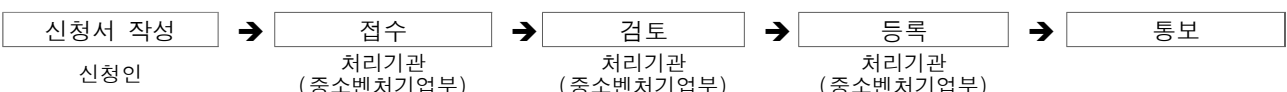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 규약 사본 (조합원 총회 의사록 및 결의서 사본 포함) 2. 조합원명부 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사본 10. 투자목적회사의 사업계획서 11.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 현황 12. 투자목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3.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및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투자목적회사의 청산결과보고서(재산을 배분한 명세, 청산감사의견서,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을 포함) <p>(9.~14. 서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p>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전환 의 조건을 연동하는 무담보전 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 할 것</u> <u>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 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u> <u>3. 제1호에 따른 무담보전환사 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 부지분전환계약일부터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까지 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 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u> <u>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u>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가. ~ 다. (생략)

<신설>

2. 3. (생략)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① (생략)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

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4. 주주의 명부

5. ~ 7. (생략)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

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주 또는 출자자-----

5. ~ 7. (현행과 같음)

② -----

-----.

1. ~ 6. (생략)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 현황의 변동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

8.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출자지분현황----

③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④ -----

----- 벤처투자회사-----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⑤ -----
----- 벤처투자회사-----

-----.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

-----.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

1. 벤처투자회사-----

-----.
----- 벤처투자회사-----

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
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
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
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
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
직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
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
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
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

2. 벤처투자회사-----

3. 벤처투자회사-----

4.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벤
처투자회사-----

-----벤처투
자회사-----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1. ~ 3. (생략)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

부동산 처분 기간) -----

-.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
----- 벤처투자회사 -----

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

-----.

1. ~ 2.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삭제>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략)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8.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의 주주 또는 사원

③ -----
----- 제2항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